

1. 개정이유

원주민 재정착과 수용방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의양도인 토지공급 유형을 확대하고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장 용지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문구 해석상 논란이 있는 지구지정 제안자의 경영 건전성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경영 건전성 기준은 시행자 지정신청일뿐만 아니라 지구지정 제안일에도 적용되므로 지구지정제안 시는 제안일을 말한다는 문구를 추가(제13조제1호)
- 나. 행정청이 공영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 용지를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제25조제6호)
- 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대상에 종교·유치원·보육시설 용지를 추가(별표3)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전단 중 “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를 “지정신청일(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지구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일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로 한다.

제25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차장

별표 3 제1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시행자는 기존에 종교시설 부지(종교법인 소유 토지에 한함)를 소유한 자가 그 종교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인에게 종교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마. 시행자는 기존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소유한 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소유한 자가 해당 유치원 또는 해당 어린이집을 이전하기 위하여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인에게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라. 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 내에서 시행자가 공급토지의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계약에 따른 토지의 공급기준 및 면적에 관한 적용례) 별표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경영의 건전성 기준) 영 제18조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 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제3호 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제13조(경영의 건전성 기준) ---- ----- ----- ----- ----- -----.
1. 도시개발사업시행자 <u>지정신</u> <u>청일을 기준으로 「주식회사</u> <u>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u> <u>제23조제5항에 따라 공시된</u> <u>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당</u> <u>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u> <u>법인일 것. 이 경우 해당 연도</u> <u>의 손익계산서가 공시되지 아</u> <u>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u> <u>손익계산서에 따른다.</u>	1. ----- <u>지정신청</u> <u>일(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지</u> <u>구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u> <u>제안일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u> <u>서 같다.)을 기준으로 -----</u>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5조(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 영 제58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시설”이란 행정청이 같은 법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제25조(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 ----- ----- ----- ----- ----- -----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삭 제 2. ~ 5. (생 략) <u><신 설></u>	-----. 2. ~ 5. (현행과 같음) <u>6. 주차장</u>
--	--